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27

발의연월일: 2022. 8. 26.

발 의 자 : 윤재옥ㆍ이 용ㆍ박성민

김희곤 • 이명수 • 배준영

이주환 · 홍문표 · 이양수

박 진 • 유상범 • 태영호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보훈병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레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최근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, 선진화된 요양 및 재활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공단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바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의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을 보임. 이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까지"를 "2025년 12월 31일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	제30조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
에 대한 감면) ① 「한국보훈	에 대한 감면) ①
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라 설립	
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	
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	
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	
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	
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,	
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	
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	
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	
각각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경	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
감한다.	<b>.</b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